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98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이수진 · 김종민 · 민병덕
남인순 · 전진숙 · 김 윤
송옥주 · 최혁진 · 전종덕
박홍배 · 김정호 · 백선희
이언주 의원(13인)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제1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안 제

10조의2제3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777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를 “출생아동에게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 대하여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등이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그 밖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 대한 이용권 지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777호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법률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을 <u>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③ <u>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u> <u><신 설></u>	법률 제21777호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법률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 ----- ----- ----- - <u>출생아동에게 지급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u>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 대하여</u>

<u><신 설></u> <u><신 설></u>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등이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그 밖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 -----.
---	---